

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7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 사유

-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운용하기위함.

2. 주요골자

- 위 원 장 : 구청장 → 부구청장
- 부위원장 : 부구청장 → 위원중 호선
- 위원수 : 15~25인이내
 - ▶ 현17명 :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3조 제1항
- 분과위원회구성 :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
 - ▶ 2개 분과위원회구성

3. 관계법령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내지 115조

4. 참고사항
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03. 1월중
- 의회상정 : 2003. 1월중
- 공포시행 : 2003년 1월중

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내지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) 위원회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들 두어 심의 할 수 있다.

제3조 (분과위원회) ①분과위원회 및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제1분과위원회

가.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,

나.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2.제2분과위원회

가.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심의에 관한사항,

나.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②각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각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있다.

④각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.

⑤각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

⑥각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4조 (회의의 소집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간사 및 서기) ① 간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.

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 (수당과여비지급)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"부산광역시사하구실비변상조례"의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자료제출의 요구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 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하되,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 (회의록) 간사는 회의시마다.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한다.

제11조 (운영세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조례의 폐지)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